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7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광호, 김상훈, 김제리, 장상기,
이태성, 김달호, 김화숙, 김경우,
이동현, 송아량, 정재웅, 김태수,
김소영, 박순규, 송도호, 유 용,
김용연, 김혜련, 서윤기, 이영실,
오현정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데이트폭력, 스토킹,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,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외에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 제정, 2019. 12. 25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,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조항의 근거 상위법 규정으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를 추가함.(안 제1조)
- 나. ‘여성폭력’의 정의를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‘여성폭력’ 정의에 따르도록 함.(안 제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”을 “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,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여성폭력”이라 함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여성폭력”이라 함은 <u>여성의 인권과 생명권, 자유권,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,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가정폭력”이라 함은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정의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여성폭력”이라 함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.</p> <p>2. ----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</p>

3.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「성폭력
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의 정의를 말
한다.

4. “성매매”라 함은 「성매매방
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
법률」 제2조의 정의를 말한
다.

5. (생략)

제3조(책무) ① 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「가정폭력방지 및
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
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
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
률」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여
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
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
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
원하여야 한다.

3. ----- 「성폭력
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
--.

4. ----- 「성매매방
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호-----
-.

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
음)

④ 시장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
법」, -----

-----.